세	취득세	등록면허세	재산세	종합부동산세	양도소득세
농특세	과세표준 X 2% X 10% / 감면액 X 20%	감면액 X 20(%)	-	20	감면액 20
지교세	표준세율-2 산출세액 X 20%/ 주택세율 X 1/2 X 20%	-	20	-	-
면세점	50만원 이하	최소액 6000	2000원 이하	-	-

- 1. 취득세(+등록면허세) <>양도소득세
- 2. 재산세 + 종부세

# 1 취득세

종가세 보통세 직접세 시,도,구 취득 설립시 과점주주 X

## 1.1 과세대상

토지 건축물 시설물 (3)

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(4) only 승계취득 입목 (1) 광업 어업 양식업 (3) 회원권(1) (12)

## 1.2 납세의무자

- 사실상 취득자
- 과점 주주 : 50 초과
  - 설립시 취득 : 취득X
  - 설립 후 최초 과점주주 : 퍼센트 전부
  - 과점주주이후 추가 취득 : 초과분 ## 취득의 시기 & 과세표준

무상승계취득 : 취득일 유상승계취득 :

- 사실상 잔금지급일 : 명확함, 과세표준 : 사실상 취득가격 (사실상 취득가격시 포함 될수있는 항목 : 내용 제외)
  - 국가
  - 수입
  - 공매
  - 판결문(화해,포기,인낙,자백조서 제외)
  - 법인 장부
- 계약상 잔금 지급일 / 과세표준 : 신고가액(min 시가표 준액)/변경으로 인한 취득 : 증가하나 가액

- 명시x시 계얄일+60일
- 연부취득 : 사실상 지급일
- 건축 : 사용승인일 , 사용일
- 토지 지목 변경, 차량~ : 변경된 날, 공부상 변경된날, 사용일
- 매립 : 공사준공인가일
- 조합외 토지 취득 : 사용검사 받은날/ 소유권이전 고시일 의 다음 날
- 법인이 아닌자 건축,대수선 취득가격중 90퍼센트 법인장 부에 따라 입증 되는 경우

# 1.3 세율(%)

- 상속 :
  - 외 : 2.8
  - 농지 2.3
- 증여 :
  - 일반인 3.5
  - 비영리 사업자 : 2.8
- 원시취득 : 2.8
- 분할: 2.3
- 유상승계:
  - 농지 : 3
  - 주택
    - \* 가액 6억이하 1
    - \* 6초과 9억 이하 : 1~3
    - \* 9억 초과 : 3
  - 외:4

#### 중과세율

- 사치성 재산(별장,골프장,고급...) : 표준세율 + 8
- 과밀억제권역~: 표준세율 + 4
- 대도시 ~ : 표준세율X3 4

• 대도시+과밀억제권 : 표준세율X3

특례

표준세율-2

- 화매
- 1가구1주택 취득
- 합병
- 분할
- 건축물 이전
- 이혼 재산분할 ...

# 중과기준세율(2)

- 개수로 인한 취득
- 가액 증가
- 과점주주의 취득
- 묘지
-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

# 1.4 부과 징수

#### 납부기한

신고 납부

- 취득한날 + 60
- 상속 : 상속개시일 달 말일로60일,실종 6개월,외국 9개월

# 가산세(%)

- 과소 : 10
- 무신고 : 20
- 부정: 40
- 중간생략등기 : 80
- 장부작성 X:10
- 기한후 신고 감면
  - 1월내 : 가산세액 50%
  - 1~3 : 가산세액 : 30%
  - 3~6 : 가산세액 : 20%
- 수정신고 감면
  - 1월내 : 가산세액 90
  - $-1\sim3:75$
  - $-3\sim6:50$

- 6~ 1년 : 30
- 1 ~ 1년6월 : 20
- 1년6 ~ 2년 : 10
- 납부불성실 : 일당 0.025% ### etc
- 면세점 : 50만원 이하
- 농특세 : 과세표준 X 2% X 10% / 감면액 X 20%
- 지교세 : 표준세율-2 산출세액 X 20%/ 주택세율 X 1/2 X 20%

## 비과세

- 국가 지방자치단체
- 귀속, 기부채납 ...
- 신탁(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이동만)
- 환매
- 1년내 임시(사치성 제외)...
- 공동주택의 개수(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, 대 수선X)
-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

# 2 등록면허세

- 등기할때
- 도,구

# 2.1 납세의무자

등록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.

# 2.2 세율(%)

- 보존등기 : 0.8
- 유상이전 : 2
- 증여: 1.5
- 상속: 0.8
- 0.2 : 과세표준
  - 지상권 : 부동산 가액
  - 저당권 : 채권 금액
  - 지역권 : 요역지가액
  - 전세권 : 전세금
  - 임차권 : 월 임대차 금액
  - 경매신청,가압류, 가처분 : 채권 금액

- 가등기 : 채권 or 부동산 가액

• 그밖 : 건당 6000

• 대도시 법인등기 : 해당세율 X 3

# 2.3 납세지

• 소재지의 납세지

• 등록관청 소재지 : 둘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경우, 둘 이상의 저당권 ## 가산세 취득세 동일

# 2.4 부과,징수

• 등기할때 부과

• 신고안해도 산출세액 등록 전까지 납부시 신고하고 납부 • 건축물 : 개별과세 한것으로 봄

지방교육세 : 세액 20(%)

• 농특 : 감면액 X 20(%)

• 세액 최소액 : 6000

# 2.5 비과세

● 국가 지자체 ...

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. 법원의 촉탁(법인의 자본금, 출자금의 납입,증자,출자전환은 제외)

• 공무원 착오, 행정상 변경, 단순 표시 변경

묘지

• 다음을 제외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,등록은 제외

- 광업 어업, 양식업권 등록

- 외국인 소유(차,기계,항공기,선박)

-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

# 3 재산세

#### 3.1 과세표준

1. 토지: 개별공시지가 X 0.7 2. 건축물 : 시가표준액 X 0.7

3. 주택 : 개별(공동)주택가격 X 0.6

#### 3.2 과세대상 & 세율(%)

토지

- 분리과세대상

\* 고율분리과세 : 사치성 재산 : 4

\* 저율분리과세:

· 공장용지,염전: 0.2

· 농지,목장용지,임야(공익목적) 0.07

- 합산과세대상(종부세O)

\* 종합합산과세 : 0.2~0.5 (주상공 농지,목장/면 적 초과분(공장용지 초과분 포함)) 일반적인 토

\* 별도 합산과세 : 0.2~0.4 (주상공 공장용지, 건 축물 부속토지)

- 사치성 : 4%

- 특별시등 공장용건축물: 0.5

- 그밖 : 0.25(과밀억제권역 5년간 5배 1.25)

• 주택(개별과세)(별장제외 종부세O)

별장 4 (토지+건축물 합)

- 6천 이하: 0.1

- 6~1억5천 : 1.5

- 1억5천~3 : 2.5

- 3억 초과: 4

• 선박(고급 5) : 0.3

항공기: 0.3

#### 세부담 상한 (%)

전년도대비

● 토지,건축물: 150

주택

- 3억이하: 105

- 6억이하: 110

- 6억초과 : 130

## 3.3 납세의무자

• 사실상 소유자

• 신탁 : 수탁자

• 주택!= 토지 소유자:

# 3.4 부과 징수

- 주택 : 7/16~7/31 9/16~30 : 20만원 이하시 첫번째때 하번에
- 건축물,선박,항공기 7/16~7/31
- 토지 9/16~30
- 납세지 : 소재지
- 보통징수
- 고지서 발부 : 납기개시 5일전
- 신탁재산에서 다른재산 압류 가능

# 물납

- 1천만원 초과, 신청, 관할구역 내 부동산
-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, 5일내 통보
- 가액 : 현재의 시가

## 분납

- 250초과
- 50퍼이하 분납
- 2개월 내

면제: 2천원 ### 가산세 국가 지차제는 가산세X

#### 부가세

지교세 : 20

# 비과세

# 4 종합부동산세

#### 4.1 주택

### 4.2 과세표준

(공시가격 합산액 - 6억 ) X 90% :과세표준

- 1세대 1주택 -6억대신 -9억
- 나온 종부세에서 재산세만큼 공제하고 과세 합산 배제 주택:
- 임대주택(조정지역제외)
- 사원용 주택 등

### 4.3 세율(%)

- 2주택 이하(전년도 150%상한) 0.6~3
  - 3주택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(전년도 300%상한): 0.8~4
  - 재산세만큼 공제

#### 1세대 1주택자공제(%)

- 합계 80%까지 공제
- 연령 60(이상)~(미만)65~70(이상)~ : 20/30/40
- 장기보유 : 5(이상)~(미만)10~15~ : 20/40/50

#### 4.4 토지

- 종합합산세액 (공시가격합산액-5억) X 90
  - / 1%/2%/3% <sub>15억이하</sub>(이하)45(초과)∼
- 별도합산세액 (공시가격합산액-80억) X 90
  - 0.5~0.7 ~200억 이하 초과~400이하 초과~
- 상한 150%

# 4.5 과세기준일

6/1

# 4.6 납부일

12/1~12/15 5일전 발부

- 신고납세제도
- 250초과 50퍼이하 6월내 분납
- 농특세 : 20
- 재산세 비과세

### 5 양도소득세

양도로 보는경우 유상양도만 해당

- 매매
- 교환
- 현물출자
- 대물변제
- 부담부증여(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)
- 공용수용

#### 세액계산

실지양도가액

- 필요경비(취득가액 + 기타필요경비)
- = 양도차익
- -장기보유 특별 공제 / 미등기배제,조정지역 2주택이상배제
- = 양도소득금액
- -양도소득 기본공제: 연 250/ 미등기배제
- = 과세표준
- X 세율
- = 산출세액

#### 양도로 안보는경우

- 환지처분
- 전체면전 20이하의 토지 분할
- 양도담보 (채무불이행시 양도 O)
- 공유물 단순 분할
- 신탁

#### 5.1 과세대상

- 토기
- 건물
-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
-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

#### 5.3 계산

## 양도가액, 취득가액

• 원칙: 실지거래가액 ### 필요경비(취득가액(실지취득 가액) + 기타필요경비(자본적 지출액+양도비))

타인으로부터 매입한자산, 이자(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이자,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)

자본적지출 :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

-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
- 설치
- 이용불가능한것을 복구

#### 양도비

- 증권거래세
- 신고서,계약서 작성비용

- 토지상환채권, 주택상환채권(토지개발채권,국민주택채 권X)
- 회원권
- 토지,건물,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

#### 5.2 양도, 취득시기

실제 대금청산일

- 증여받은날
- 시효취득 : 점유개시일
- 환지처분 :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
- 환지처분의 증감부분 :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
- (주식제외) 1984년 12/31일 이전 취득 : 1985 1.1 취득
- 공증비용,인지대, 소개비
- 명도 비용

쟁송시 소송비용 : 포함X

- 예외 : 추계조사, 다음순서 순으로 적용
  - 1. 매매사례가액: 3개월 이내 유사성, 가액
  - 2. 감정가액: 3개월내 둘이상의 감정가액 평균
  - 3. 환산취득가액: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X(취득/양도)기준시가비
  - 4. 기준시가: 개별공시지가(주택가격)
- 추계시 필요경비개산공제
- 토지,건물 : 취득 기준시가X3%(미등기 0.3)
- 지상권,전세권,등기임차권 : 취득기준시가X7%

환산취득가액일 경우 최소화

max(환산취득가액+필요경비개산공제액, 자본적지출액+ 5.6 신고 납부 양도비)

# 장기보유특별공제

- 1세대 1주택(거주기간 2년이상) : 년당 8퍼센트 3년부터 적용 상한 80%(10년)
- 일반 : 년당 2퍼센트 3년부터 적용 상한 30퍼센트(15년)

# 5.4 세율(%)

### 토지 건축물

- 미등기 : 70
- 1년미만 보유 : 50
- 1~2년 : 40
- 2년이상 : 6~42(누진세)
- 비사업용 토지: 6~52

## 주택

- 미등기 : 70
- 1년 미만 : 40
- 1년 이상 6~42
- 1세대 2주택 + 조정대상지역 주택 :
  - 1년 이상 : 기본세율(6~42) + 10%
  - 1년 미만 : max(40, 기본세율+10)
- 1세대 3주택 + 조정대상지역 주택 :
  - 1년 이상 : 기본세율(6~42) + 20%
  - 1년 미만 :  $\max(40, 기본세율+20)$

#### 5.5 etc

• 부당행위 인정 : 시가,거래가액 차액 3억이상 / 시가의 5/100에 상당하는 금액 차이 -> 시가로 메김

#### 예정신고

말일로 2개월

#### 신고

다음년도 5/1~31 신고

# 분납

- 2개월내
- 1천 초과

#### 가산세

취득세와 동일

## 기한후 신고

감면 - 1월내 무신고가산세 X 50 - 3월내 : 30% - 6월내 : 20%

#### 농특세: 감면액 20%

1세대 1주택자(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은 2년이상 거주)

- 결혼같이 생활
- 30세이상
- 배우자 사망,이혼
- 독립된 생계유지가능

1세대 1주택자의 고급주택 양도차익 X (양도가액-9억)/양도가액